

폰트와 폰트 파일의 법률적 보호에 대한 연구

윤 기 승*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폰트와 폰트 파일의 법률적 보호 |
| II. 폰트 관련 외국의 입법례 | IV. 결론 |

1. 서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폰트¹⁾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A(도급인)가 외부 제작업체인 B(수급인)에게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결과물의 제작을 의뢰하고 또 B(수급인)가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결과물을 완성한

◆ 투고일자: 2019. 10. 08. 심사완료일: 2019. 12. 13. 게재확정일자: 2019. 12. 26.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래교수, 법학박사

1) “폰트”라는 용어는 글자체, 글꼴, 서체, 타이프페이스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편의상 “폰트”라는 용어로 통일하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라는 용어가 사용되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만은 “글자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우,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A에게 전화를 하여 A의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폰트가 의뢰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경고장을 보낸다. 또는 A가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에 사용된 폰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면, 그 변호사는 그 폰트 파일의 고유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다. 하지만 A는 폰트나 폰트 파일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민법상 도급계약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변호사의 주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A는 합의금을 주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폰트인지, 아니면 폰트 파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민법상 도급계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에는 사무 자동화기기 등의 급속한 보급과 문자 처리의 전자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폰트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폰트 개발업체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폰트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된 폰트 디자인은 폰트 파일로 만들어져서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폰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 디자인에 해당되므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폰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절차와 이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실체심사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그 디자인권은 일정한 경우에 그 효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즉,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2) 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디자인권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폰트 개발업체들은 자신이 창작한 폰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기도 하겠지만, 저작권법상 저작물인 글자체(폰트) 파일로 보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디자인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또 그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므로, 폰트 개발업체들은 자신이 개발한 폰트에 대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폰트와 폰트 파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폰트와 폰트 파일이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폰트 제작업체가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제작된 간판,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낸 경우에 그 결과물의 사용자는 폰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주고 그 사건을 해결하곤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법률적 보호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폰트와 폰트 파일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폰트와 폰트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폰트 관련 외국의 입법례

1. 유럽

유럽은 전통적으로 폰트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으나, 1973년도에 유럽 11개국이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 기탁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이라 함)”을 제정하여 이에 서명함으로써 폰트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체약국은 각국에서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또는 특별 입법에 의하여 폰트(글자체) 디자인을 보호하며, (2) 보호조건으로서 신규성이나 독창성, 또는 양자를 요구하며, (3) 보호기간은 최저 15년으로 하고, (4) 권리자는 자신의 폰트(글자체)를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또 이러한 복제권은 타인이 그 폰트(글자체)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꾸며 출판물로서 인쇄하는 행위에도 미치도록 하며, (5) 국제기탁제도를 두도록 하고, 또 (6) 분쟁해결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1998년도에 EU 디자인지침²⁾을 마련하여, EU 디자인지침 제1조(a)는 “디자인이라 함은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외형으로서, 제품 자체 및/또는 제품 장식의 특징, 특히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및/또는 소재로부터 파생되는 외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1조(b)에서는 제품에 인쇄용 글자체(typographic typefaces)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폰트(글자체)는 타 디자인 제품과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다. 또한 EU 디자인지침 제17조는 설정등록된 디자인은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으로도 보호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조건 등의 보호요건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1981년 비엔나 협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폰트를 실체심사 없이 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특별법은 2004년도에 폐지되었고, 대신에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물품의 정의에 폰트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폰

2) Directive 98/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

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폰트가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서에 사용되는 서체가 구비하기 힘든 미적 탁월성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술성을 요구하고 있다.³⁾

영국은 폰트를 저작권과 디자인권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를 한다. 다만 영국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제54조 제1항은 일상적인 타이핑, 문서 작성, 인쇄 과정에서 폰트를 사용하는 행위, 이를 위한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폰트 사용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폰트 디자인으로 구성되는 미술저작물(artistic works)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통상적인 인쇄과정에서 폰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또한 CDPA 제55조는 폰트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 최초로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제공이나 전시를 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제품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 없이 복제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영국의 CDPA는 폰트에 대한 보호기간을 폰트에 의한 제품이 생산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2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보다 짧게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 지적재산권법⁴⁾ 제112-2조는 “그래픽과 타이포그래피 작품(les oeuvres graphiques et typographiques)”을 저작물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⁵⁾ 동법 제511조-1조에서는 디자인 보호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그래픽 심볼과 인쇄용 폰트(les

3) 류시원, 앞의 논문, 25면.

4)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ernière modification: 7 novembre 2018).

5) 박경신,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을 중심으로-”, 『저작권 동향』 제2015-1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8면.

symboles graphiques et les caractères typographiques)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폰트와 폰트 파일을 구별하여, 폰트는 특허법⁶⁾으로,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즉, 미국은 폰트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법상 디자인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폰트 디자인에 대하여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은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신규성(novelty) 및 비자명성(non-obviousness)⁷⁾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 특허법 제171조⁸⁾는 신규하고,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공업제품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특허청은 1996년도에 ‘컴퓨터와 관련된 디자인 특허출원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공업제품 디자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특허법 제1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폰트 디자인에 대한 청구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즉, 폰트 디자인이 인쇄용 활자판

6)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디자인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에 대하여는 특허법상 디자인특허로 보호를 한다.

7) 미국 특허법은 우리나라 특허법상 진보성과 유사한 비자명성(non-obviousness)을 요구하므로, 폰트 디자이너 및 해당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폰트 디자인과 확연히 차이가 있어야 디자인특허로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다.

8) 35 U.S. Code § 171. Patents for designs

(a) In General.-

Whoever invents 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solid printing block) 등의 물품에 구현되지 않아도 디자인특허로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폰트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의 측면을 살펴보면,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하여 기능과 미의 분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능적인 형태의 폰트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¹⁰⁾ 또 1976년 하원 보고서에서도 폰트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¹¹⁾ 이외에도 Eltra Corp. v. Ringer 사건¹²⁾에서 제4순 회항소법원은 폰트는 예술작품이 아니므로 저작권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또 1998년 미국 저작권법 시행규칙(37 CFR §202.1(e))도 폰트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¹³⁾

다만 1998년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dobe Systems Inc. v. Southern Software, Inc. 사건¹⁴⁾에서 동일한 기호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폰트 편집자들이 폰트 파일을 구성하는 포인트를 창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그 제작과정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폰트는 저작권법이 아닌 특허법으로 보호를 하고,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9) 류시원,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체계 재고를 위한 현실적 토대”,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25면(U.S. Federal Register,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Design Patent Applications for Computer-Generated Icons, 61 Fed. Reg. 11380 (Mar. 20, 1996)).

10) 17 U.S.Code §101. Definitions.

11)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69면.

12) Eltra Corp. v. Ringer, 579 F.2d 294 (4th Cir. 1978).

13) Jonathan L. Mezrich, Extension of Copyright to Fonts - Can the Alphabet be Far Behind?, Computer L. Rev. & Tech. J., 1998.

14) Adobe Systems Inc. v. Southern Software Inc., 45 USPQ 2d 1827 (NDCal. 1998).

3. 일본

일본 의장법 제2조는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폰트 디자인이 일본 의장법상 의장의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품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일본은 의장법에서 엄격한 심사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물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폰트(글자체)는 의장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일본 판례는 폰트 디자인이 심미적 기능보다 정보를 교환하는 실용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폰트 디자인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다. 즉, 일본은 작품에 대하여 (1) 순수한 예술작품과 (2)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용적이고 효용적인 기능도 함께 가진 작품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그 작품이 예술적 창작성(artistic craftsmanship)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¹⁵⁾ 따라서 일본은 예술적 창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가능성 이론과 상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폰트 디자인은 예술적 창작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은 폰트 디자인은 의장법상 물품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장법으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또 저작권법상 예술적 창작성 결여로 인하여 저작권법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¹⁶⁾ 다만, 일본은 폰트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¹⁷⁾

15) Dennis S. Karjala and Keiji Sugiyama, *Fundamental Concepts in Japanese and American Copyright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6, No. 4 (Autumn, 1988), 625면.

16) 박승민·송양호, “폰트 보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385-386면.

17) 류시원, 앞의 논문, 26면.

4. 중국

중국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 실용적 기능과 예술적 요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리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폰트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다수설의 견해이다. 또한 중국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술성을 구비해야 저작물이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미술 저작물에 비하여 폰트 디자인이 낮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¹⁸⁾

또한 중국은 판례를 통하여 폰트 파일의 독창성을 인정하여 이 파일의 저작물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이 폰트 파일은 창작자가 각각의 개성에 맞게 윤곽선을 조정하고 또 좌표값을 변형하여 만드는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¹⁹⁾ 즉, 중국의 학설 및 판례는 폰트 디자인이나 폰트 파일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²⁰⁾

Ⅲ. 폰트와 폰트 파일의 법률적 보호

1. 폰트의 법률적 보호

(1)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종래에는 폰트(글자체) 개발자가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이

18) 황선영, “중국저작권법의 글자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중국법연구』 제20집, 한중법학회, 2013, 301면.

19) 황선영, 앞의 논문, 303면.

20) 류시원, 앞의 논문, 26면.

를 개발하였으나, 개발된 글자체²¹⁾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동종 경쟁업체의 도용 및 모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글자체의 개발 의욕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²²⁾ 이에 2004년 개정 디자인보호법²³⁾은 물품성이 구비되지 않은 글자체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즉,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요구하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서 물품성에 글자체를 포함하는 규정을 삽입하였다.²⁴⁾ 따라서 비록 글자체가 물품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 반면²⁵⁾,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²⁶⁾²⁷⁾ 따

21) 디자인보호법상 용어는 “글자체”이므로, 여기서는 “폰트” 대신에 “글자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2)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2판, 2015, 42면.

23) 이 법률은 2004년 12월 31일 개정(2005년 7월 1일 시행)으로 “의장법”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디자인보호법 이전의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물품성이 구비되지 않은 글자체는 의장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못하였다.

24)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5)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26)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27) 2013년 5월 28일 개정(2014년 7월 1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이전의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서 글자체 제작자가 해당 글자체를 한 벌의 글자꼴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면 그 디자인권자는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까지 그 글자체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을 하더라도 타인이 자신의 글자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글자체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만 있을 뿐,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 글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는 어렵다. 즉,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은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2) 위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글자체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포함시키는 대신 그 글자체 디자인권의 소극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3) 글자체 디자인회사 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²⁸⁾ 즉, 이는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글자체를 제작하는 사업자 간의 복제를 막으려는 것이지 글자체

28) 법률 제728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4. 12. 31. 디자인보호법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

를 사용하는 자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글자체의 일상적인 사용 및 그 사용의 결과물에는 디자인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글자체에 대한 독점배타권이 인정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²⁹⁾

즉,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가 디자인의 정의 규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물품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디자인권의 소극적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쇄업계의 최종 사용자가 그 글자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자체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 그 출원에 대한 심사 기간도 1년여 정도로 길다는 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비하여 훨씬 짧다는 점, 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아도 글자체의 일상적인 사용 및 그 사용의 결과물에는 디자인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글자체 제작업자는 디자인보호법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글자체 제작업자는 자신이 창작한 글자체에 대하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또 그 보호기간도 긴 저작권법으로의 보호를 추진하고 싶어 한다.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³⁰⁾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 바,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29) 류시원, 앞의 논문, 37-38면.

30)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 포함),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³¹⁾

하지만 저작권법은 폰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서예와 같은 손글씨나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인 캘리그래피(Calligraphy) 등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예시된 미술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³²⁾ 대법원도 저작권법이 서체도안의 저작물 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³³⁾ 즉, 폰트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앞서 서술한 것처럼 저작권법이 아닌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폰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과 관련된 규정 및 판례를 살펴보면, 폰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폰트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³⁴⁾

31)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32) 김현숙, 앞의 논문, 269면.

3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34) 본래의 법률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편의상 본 논문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지칭한다.

으로 보호될 수도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중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³⁵⁾ 그러므로 폰트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성이 부정되거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않아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타인이 제작한 것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³⁶⁾ 따라서 폰트 그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2. 폰트 파일의 법률적 보호

(1) 판례의 태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폰트 그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고,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예시되어 있고, 또 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함)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은 이렇게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므로,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

3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36) 김현숙, 앞의 논문, 273면.

로그래밍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⁷⁾ 또한 폰트 파일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³⁸⁾

(2)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 여부

글자 모양의 폰트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고 대신에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 디자인에 해당되는 반면, 폰트 파일은 앞서 본 판례의 내용처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

37)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38)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상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은 출원절차가 필요한 디자인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고, 또 그 보호기간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 동안 존속되는 디자인권과 달리 저작자 사후 70년간까지 보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폰트 제작업자들은 폰트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보다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다분히 정책적인 판결로 보인다. 즉, 폰트 그 자체를 저작물로 인정하면 일반적인 이용자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폰트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폰트 파일과 컴퓨터프로그램은 너무나 다르다는 측면에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판례는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고, 또 제어점 좌표값의 이동을 통해 폰트 디자인을 다듬는 행위에 창작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폰트 파일은 기본적으로 폰트 디자인을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해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고, 그 결과물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었고, 또 지시 또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폰트 디자인에 대한 컴퓨터적인 표현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³⁹⁾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판례의 입장대로라면 폰트 디자인을 다듬는 행위를 하는 자와 이를 폰트 파일로 생성하는 작업을 하는 자 중 누가 저작자인지가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미국이 1998년 당시 폰트의 저작물성은 부

39) 임원선, “글자체의 법적 보호(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계간 저작권』 제14권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1, 40면.

정한 뒤 이후 폰트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⁴⁰⁾는 Adobe System Inc. v. Southern Software Inc. 사건에 대한 판결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듯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미국 법원의 판결과 같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 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폰트 파일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옹호하기도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계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기도 한 논문도 있지만,⁴¹⁾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 모두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폰트 파일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한 정책적인 고려인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폰트와 폰트 파일을 구별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경우의 법률적 보호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구체적인 경우의 법률적 보호

(1) 폰트(글자체)의 경우

폰트(글자체)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그 디자인권은 국내에서 독점배타권을 가진다.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40) 백경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법의 지배 -최근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에 대한 ‘필요적’ 사법적극주의적 검토-”,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131-132면.

41) 정진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규정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정보법학』 제17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 113면.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또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 형사적 구제조치로서 디자인권의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할 수도 있다.

다만, 디자인권자는 타인이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폰트(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폰트(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다. 즉, 폰트(글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출판·인쇄업계 및 일반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보호법은 이 폰트(글자체)에 대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폰트(글자체)의 생산 및 생산된 폰트(글자체)의 유통행위에만 미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⁴²⁾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폰트(글자체)의 사용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비록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폰트(글자체)라고 하더라도 인쇄업체 등의 최종 사용자는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그 폰트(글자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

(1) 폰트 파일의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은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의 발생에 대하여 무방식주의를 취하므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⁴³⁾ 다만, 저작권자가 폰트 파일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할 수가

42)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3정판), 세창출판사, 2009, 363면.

있는데, 이는 저작권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폰트 파일이 저작권인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나눠 그 법률 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타인의 폰트 파일에 있는 폰트 디자인을 베껴 그리는 방식으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폰트 디자인을 작성하는 경우, 그 폰트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그 폰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폰트(글자체)의 생산 및 생산된 폰트(글자체)의 유통행위에만 미치므로 그 폰트(글자체)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그 폰트(글자체)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폰트(글자체)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위반으로 거절되고, 착오로 등록이 되면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둘째, 타인의 폰트 파일에 있는 폰트 디자인을 보고 그 폰트 디자인과 동일한 폰트 파일을 제작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폰트 파일에서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폰트 디자인에 대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 작업을 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타인이 그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 작업을 스스로 하여 폰트 파일을 제작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⁴⁴⁾ 즉, 폰트 파일이라는 저작권에서 폰트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폰트 개발업자가 그 폰트 자체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그 폰트 디자인과 동일한 폰트 파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 디자

43)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44) 이철남,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 최근의 국내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177면.

인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폰트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폰트(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폰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아야 한다.

셋째, 타인의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간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을 만든 경우, 타인의 폰트 파일은 저작권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그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폰트 파일을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⁴⁵⁾ 침해에 해당된다.⁴⁶⁾ 즉, 저작권법상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폰트 파일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된다. 하지만 제3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인 반면, 그 복제된 파일을 이용하여 간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간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폰트 파일을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A라는 의뢰인이 B라는 외부 제작업체에게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 결과물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이다. 외주업

45)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또는 동일성 유지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표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46)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명예회복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는 형사적 구제조치로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병과 가능),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병과 가능).

체인 B가 그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러한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을 제작하여 A에게 납품을 한 경우 외부 제작업체 B가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은 당연하지만, 의뢰인 A가 외부 제작업체 B로부터 납품받은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즉, 의뢰인 A는 저작권인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만든 결과물만을 이용한 것이지 그 폰트 파일을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 A가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복제권, 배포권 또는 전송권이라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상 도급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데, 도급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A가 도급인이고 B가 수급인인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B가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한 경우 수급인인 B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도급인인 A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 결과물의 제작을 의뢰한 A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침해가 아니므로 도급인 A는 그 결과물인 간판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IV. 결론

폰트 개발업체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폰트를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폰트가 제대로 된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폰트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비엔나 협약을 통하여 폰트를 본

격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EU 디자인지침을 통하여 폰트를 다른 디자인과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EU 디자인지침은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은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으로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 범위와 조건 등의 보호요건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폰트와 폰트 파일을 구분하여, 폰트는 미국 특허법상 디자인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폰트와 관련된 미국의 법규 및 판결처럼 폰트 파일이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폰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폰트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가 없다. 다만 이러한 폰트는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 디자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정등록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위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글자체의 생산 및 생산된 글자체의 유통행위에만 미치는 것이며, 인쇄업계 등 최종 사용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폰트 디자인에 대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 작업을 한 부분이므로,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폰트 파일을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그 복제된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간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와 같은 폰트 및 폰트 파일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폰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폰트 개발업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그러한 법률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폰트 개발업체들의 권리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또 그 폰트와 관련된 과도한 권리 행사로 인하여 제3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3정판), 세창출판사, 2009.
- 류시원,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체계 재고를 위한 현실적 토대”,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 박경신,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을 중심으로-”, 「저작권 동향」 제2015-1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 박승민·송양호, “폰트 보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 백경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법의 지배 -최근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에 대한 ‘필요적’ 사법적극주의적 검토-”,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 유길상·김현철, “디지털 폰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 및 공정이용”, 「한국정보기술학회지」 제13권 제1호, 한국정보기술학회, 2015.
- 이상정, “우리나라에서의 글자체의 보호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제26권 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 이정윤,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10집 제10호, 한국디자인학회, 2010.
- 이철남,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최근의 국내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8.
- 임원선, “글자체의 법적 보호(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계간 저작권」 제14권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1.
- 정진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규정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정보법학」 제17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2판), 2015.
- 황선영, “중국저작권법의 글자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중국법연구」 제 20권, 한중법학회, 2013.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해외 문헌〉

- Dennis S. Karjala and Keiji Sugiyama, Fundamental Concepts in Japanese and American Copyright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6, No. 4 (Autumn, 1988).
- Directive 98/7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
- Jonathan L. Mezrich, Extension of Copyright to Fonts -Can the Alphabet be Far Behind?, Computer L. Rev. & Tech. J., 1998.
- U.S. Federal Register,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Design Patent Applications for Computer-Generated Icons, 61 Fed. Reg. 11380 (Mar. 20, 1996).
- Adobe Systems Inc. v. Southern Software Inc., 45 USPQ 2d 1827 (NDCal. 1998).
- Eltra Corp. v. Ringer, 579 F.2d 294 (4th Cir. 1978).

〈국문 초록〉

많은 국가들이 폰트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폰트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폰트 그 자체는 저작권 법상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폰트(글자체)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면 그 글자체 디자인권은 그 글자체 디자인과 유사범 위까지 독점배타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위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또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폰트 디자인에 대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 작업을 한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폰트 파일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그 복제된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간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결과물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와 같은 폰트 관련 법률적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저작권 침해의 경고장 등을 받은 경우에 무척 당황해 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폰트를 개발하는 폰트 개발업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3자가 이와 관련된 법률을 알지 못하여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폰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상세히 서술함으

로써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제어: 폰트, 폰트 파일, 글자체, 글자체 디자인, 서체 도안, 서체 파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Fonts and Font files

Yoon, Giseung^{*}

Many countries regulate legal protection with fonts and accumulate their precedents. Similarly, in Korea, laws and precedents related to fonts are as follows. Since the font itself is hardly regarded as copyrighted work, a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 must be filed to protect it. In principle, when a design right is registered for a font, the font design right has a monopoly exclusive right to the font design and a similar range. However, the validity of the right to design shall be limited when the typeface is used in the normal process such as typing, typesetting or printing, or when the result is produced by the use of the typeface. In addition, since font files correspond to computer programs, they may b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However, the part where the work of authoring the font file is recognized is limited to the part where the

^{*} Ph.D. in Law, Lecturer of Kyonyang Univ.

outline of the font design is modified or produced. Therefore, the unauthorized copying of the font file by a third part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is a copyright infringement, but the copyright does not have effect on the result of signboard, publicity, homepage, etc. by using the copied font file.

The general public is not aware of the legal relationship with fonts. Therefore, ordinary people are very embarrassed when they receive a warning of copyright infringement from an attorney who is a representative of the copyright holder of a font file, and try to close the case in a short time. Of course, it is important to legally protect font developers who develop fonts with a lot of time and effort, but it is also important to prevent third parties from being inadvertently harmed by not knowing the law.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help general people understand the legal relations related to the font by describing the legal relations related to fonts in detail.

Key Words: fonts, fonts file, font design, typeface, design right, copyright